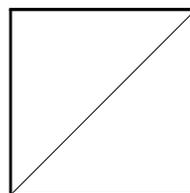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7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5. 13. (제 9 차)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5. 13.

## 1. 의결주문

- 한국산업은행이 인가 신청한 별지의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안」을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안대로 인가한다.

## 2. 제안이유

-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한국산업은행의 정관 일부변경안을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기 위함

\* 한국산업은행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3. 주요골자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의 근거 신설 (안 제40조제2항제7호의2)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을 한국산업은행의 소관업무에 반영
-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회계 기준 수립 (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5)
  -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기금 설치의 근거규정 반영
  - 기금의 사용용도, 여유자금의 운용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의 수립

\*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의 발행 및 자금차입 방법 신설  
(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 기금채권의 발행 근거 및 절차\*,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근거 등

\*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 가능성 규정

□ 기금의 자금지원 절차와 요건 수립 (안 제52조의6)

- 자금지원의 필요절차\*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지원조건 부과 근거

\*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운용심의회')의 설치·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52조의7에서 제52조의9까지)

- 운용심의회 설치근거 마련 및 운용심의회 심의 사항 신설

- 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기준 및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 ①국회 소관상임위, 기재부장관,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추천, 산은회장 지명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용심의회 소집 및 의결 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4. 시행일 : 금융위원회의 정관 변경 인가일

5.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참고1>

나. 관계법령 : <참고2>

< 별 지 >

##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안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0조(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략)

② 이 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7. (생략)

7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8.~9. (생략)

제7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한다.

제52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신설한다.

① 이 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2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을 신설한다.

① 이 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방식과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이 은행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의 보

증을 받을 수 있다.

제52조의4(자금의 차입)을 신설한다.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2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을 신설한다.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운용비용

②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52조의7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③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의6(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을 신설한다.

①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의7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이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의7(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을 신설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의8(운용심의회 구성)을 신설한다.

① 운영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이 은행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운용심의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2조의9(운용심의회 운영)을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용심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용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용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e-mail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운용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용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정관 변경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참고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40조(업무)</p> <p>② -----.</p> <p>1.~7. (생략)</p> <p>&lt;신설&gt;</p> <p>8.~9.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40조(업무) ② -----.</p> <p>1.~7. (현행과 같음)</p> <p>7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 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p> <p>8.~9. (현행과 같음)</p> <p>제7장의2 위기극복과 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p> <p>제52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이 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라 위기극복과 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p> <p>제52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이 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이 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채권의 발행방식과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p> <p>④ 이 은행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52조의4(자금의 차입)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 설>	<p>제52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li> <li>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li> <li>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li> <li>4. 기금의 운용비용</li> </ol> <p>②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채·공채 등의 매입</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li> <li>3. 그 밖에 제52조의7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li> </ol> <p>③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52조의6(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이 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의7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이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p><u>&lt;신 설&gt;</u></p>	<p><u>제52조의7(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기간 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u></li> <li><u>2.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3. 그 밖에 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u>&lt;신 설&gt;</u></p>	<p><u>제52조의8(운용심의회외의 구성) ① 운영심의회외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u></li> <li><u>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u></li> <li><u>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u></li> <li><u>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u></li> <li><u>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u></li> <li><u>6. 회장이 이 은행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u></li> </ol> <p><u>② 운용심의회외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p> <p><u>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현 행	개 정(안)
<p><u>&lt;신 설&gt;</u></p>	<p><u>제52조의9(운용심의회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용심의회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운용심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용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e-mail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p> <p><u>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u>⑤ 운용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용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 < 참고 2 > 관계법령

### < 한국산업은행법 >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업무)**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 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기간산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 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안) >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2.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 정관 >

**제4조(정관의 변경)** 이 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산업금융과/이행지원팀
연 락 처	02-2100-1662